

- 또한, 각 시·도별로 외국어 학원 시설기준을 보면, 최소 60㎡에서 최대 150㎡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유독 서울시만 과도한 시설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대로 현행 330㎡에서 150㎡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등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밖에 조례 제명의 개정이나 자동차운전 관련규정의 개정 등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의 “국제실무”의 “강의실·실습실·열람실”란 중 “100㎡ 이상”을 “150㎡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안건별 심사결과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으로 한다.

제1조 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교습중지 명령 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한다.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 중 국제실무분야, 외국어계열, 어학교습과정 「강의실·실습실·열람실」란의 “330㎡ 이상”을 “150㎡ 이상”으로 하고, 비교란 중 “생활편익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2】 <2-1. 자동차 운전>의 “교습과정”란과 “시설·설비 및 교구”란의 내용을 삭제한다.

【별표 3】 <2-1. 자동차 운전>의 “교습과정”란과 “일시수용능력인원” 및 “비교”란의 내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청
- 의결(처리건수) : 8건(원안동의 8건)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정내역	심사결과
894	2001. 6. 9	2001. 6.11	제20회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6.26)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보류 원안동의 (조건부)
895	2001. 6. 9	2001. 6.11	제20회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6.26)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보류 원안동의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정내역	심사결과
896	2001. 6. 9	2001. 6.11	제20회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6.26)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보 류 원안동의
933	2001. 8.20	2001. 8.22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원안동의
934	2001. 8.20	2001. 8.22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원안동의
936	2001. 8.20	2001. 8.22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원안동의 (소수의견 제시)
937	2001. 8.20	2001. 8.22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원안동의
938	2001. 8.20	2001. 8.22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원안동의

2. 상정일자
제20회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2001.6.22) 상정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2001.9.7) 상정, 의결

3. 제안이유 및 요지
가. 제안이유
별첨내용
나. 주요요지
안건별 내용 별첨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안건별내용 별첨

5. 심사결과
○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
로서, 도시계획 결정과 변경결정을 실제로

3. 주요요지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사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 결정안이 범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관
계되는 결정(변경)안 8건에 대하여 시장
결정(변경)안대로 원안동의 하였음.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894	제출일자	2001. 6. 9
----------	-----	------	------------

1. 안 건 명 :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지역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
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0,954㎡	-	70,954㎡	1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70,954㎡	감70,954㎡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564㎡	1,564㎡	2.2%	도로부분
	준주거지역	-	증 15,160㎡	15,160㎡	21.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54,230㎡	54,230㎡	76.4%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허용	
1	신대방동 701-11호 일대(도로부분)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64	-	-	도로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
2	신대방동 686-24호 일대	"	준주거지역	15,160	240~300%이하	360%이하	지역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3	신대방동 686-5호 일대	"	일반상업지역	54,230	300%이하	550~630%이하	"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 대립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중심지체계상 지역중심으로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와 연결하여 있는바, 용도지역계획은 4개 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함이 합리적일 것임.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상업지역 지정에 위한 공간수요추계상 지역중심에서의 상업지역 배분면적 38,000㎡로서 관악구 14,920㎡, 영등포구 19,280㎡, 구로구 약 9,000㎡(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에 따라 면적변경가능)로서 상업지역 면적의 합이 약 42,000㎡가 되는바, 공간수요추계 및 당해지구단위계획의 입지성을 고려할 때 상업지역의 추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용도지역 배분방안으로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입안된 중의계약(신대방동 689번지), 대한광업진흥공사(698-48호), 태평양(686-54호), 일화모직(686-4호) 등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 하되, 당해부지를 특별계획구역(입안됨) 지정하여 용도지역변경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시 추후 변경결정 하고,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신대방동 686-24호 일대는 양호한 환경의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일반주거지역 세분지정

을 위한 검토기준에 의거 용적률 및 층수 등으로 판단할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대상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협의 대상지역이고, 지역중심으로서 간선도로변 연접부지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바,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용지에 대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인접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 요망

6. 서울시의견

- 도시계획과 의견
 - 띠모양의 소규모 도로부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중인 사항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도시계획수렴지침에 따라 "2개(용도)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을 지역의 경계로 조정 요망
 -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도로로 위요된 ㉞번 획지는 공원화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그릴 경우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특별계획구역간의 분담 문제는 별도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됨.
- 도시관리과 의견
 - 신대방길과 시흥대로를 경계로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4개 자치구에서 각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거나,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특별계획구역인 광업진흥공사, 태평양, 일화모직부

<p>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한 동 지구단위계획은 신대방길과 단절된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판단됨.</p> <p>-일부 특별계획구역은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별계획구역 지침에서 추후 세부개발계획결정시 계획(안)에 맞춰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아파트 입지시에는 일반주거지역 존치)</p> <p>※ 기 결정된 대림지역중심(타 자치구)의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상업지역 소요추정에 따라 상업지역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p> <p>-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지역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존치가 바람직하며,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공지 등 완충지대 설치 바람직</p> <p>○ 시설계획과 의견</p> <p>-용도지역 조정과 관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휴식공간(공원, 녹지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요함.</p> <p>7. 검토의견(전문위원)</p> <p>○ 본 안건은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대림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일반주거지역 70,954㎡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1,564㎡, 준주거지역으로 15,160㎡, 일반상업지역으로 54,230㎡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p> <p>○ 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등포, 구로, 관악, 동작구의 4개 구가 연결되어 있으며 2011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고, 1997.9.29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0.12.8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되었고 대한광업진흥공사, 태평양, 중외제약, 일화모직의 대규모 토지가 위치하고 이면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임.</p> <p>○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p> <p>-상업지역지정을 위한 공간수요추계상 지역중심에서의 상업지역 배분면적 38,000㎡로서 관악구 14,920㎡, 영등포구 19,280㎡, 구로구 약 9,000㎡로서 상업지역 면적의 합이 약 42,000㎡가 되는바, 공간수요</p>	<p>추계 및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지성을 고려할 때 상업지역의 추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p> <p>-대한광업진흥공사, 태평양, 중외제약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하향하되 특별계획구역(입안됨)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추후 변경하고,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단지로 개발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고</p> <p>-준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신대방동 684-24 일대는 양호한 환경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일반주거지역 세분지정을 위한 검토기준에 의거 용적률 및 층수 등을 종합 판단할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p> <p>○ 서울시(도시관리과)에서는</p> <p>-특별계획구역인 광업진흥공사, 태평양, 일화모직, 중외제약 부지의 용도지역변경은 신대방길과 단절된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고</p> <p>-일부 특별계획구역은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고 추후 세부 개발계획 결정시 계획(안)에 맞춰 변경하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바,</p> <p>○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서울시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동지역내 70,954㎡의 일반지역 중 15,160㎡(21.4%)를 준주거지역으로 54,230㎡(76.4%)를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바, 광업진흥공사, 태평양, 일화모직 등 특별회계구역 대상부지는 특별계획에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동계획에 맞추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p> <p>○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모두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및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p>
--	---

변경하는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2개 용도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을 용도지역의 경계로 설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895 제출일자 2001. 6. 9					
8. 심사결과 : 원안동의(조건부) ○특별계획구역내의 토지는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건축물의 높이규제는 최고높이(미터)로만 규제하고 층수규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임.		1. 안건명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동작구 상도동 366-1 일대 상도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사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6,426m ²	-	116,426m ²	1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16,426m ²	감116,426m ²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30,025m ²	30,025m ²	25.8%	도로 및 광장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2,510m ²	32,510m ²	27.9%		
	준주거지역	-	증 41,544m ²	41,544m ²	35.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2,347m ²	12,347m ²	10.6%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준	허용	
1	상도동 366-1호 일대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0,025	-	-	도로 및 광장의 용도지역 세분화
2	노량진동 314, 315번지, 상도동 363-3호 일대	"	제3종일반주거지역	28,980	200% 이하	200% 이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3	상도동 373-1호 일대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530	200% 이하	250% 이하	지구중심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4~7	상도동 370-12, 176-1, 183-15, 363-164호 일대	"	준주거지역	41,544	240~300% 이하	360% 이하	"
8~10	상도동 368-19, 366-22, 365-4호 일대	"	일반상업지역	12,347	300% 이하	600~630% 이하	"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로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도 립 로 미관지구	역사 문화 미관 지구	· 장승배기광장 서측 : 노량진동 315-1~ 상도동 366-38 · 장승배기광장 남측 : 상도동 183-3~ 상도동 368-11	4,420	385	양측 7~12	서고시 제164호 ('82.4.22)	장승배기길 상도동길
변경			일반 미관 지구	· 장승배기광장 서측 : 노량진동 315-1~ 상도동 366-38 · 장승배기광장 남측 : 상도동 183-3~ 상도동 364-36	5,060	438	양측 7~12		장승배기길 상도동길
기정	2	관 악 로 미관지구	역사 문화 미관 지구	· 장승배기광장 남동측 : 상도동 373-72~ 상도동 368-57 · 장승배기광장 동북측 : 상도동 370-27~ 상도동 25-40	4,900	345	양측 11~15	서고시 제194호 ('84.4.17)	상도동길
변경			일반 미관 지구	· 장승배기광장 남동측 : 상도동 373-72~ 상도동 368-57 · 장승배기광장 동북측 : 상도동 370-27~ 상도동 25-40	4,900	345	양측 11~15		상도동길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 립 로 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장승배기광장주변 미관지구 · 추가지정 · 폭원 : 7~12m · 추가연장 : 53m · 추가면적 : 640㎡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조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 장승배기역의 입지로 교통광장(장승배기광장)주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추가 지정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관악로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상 향조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토지의 효율 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4. 주민의견청취결과 : 2건접수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동작구 상도2동 373-55 정희곤	상도2동 373-55, 373-86 호는 현재 상가의 구실 을 하고 있는 지역이므 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으로 변경요망	당초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였 으나, 서울시협의('99.7.23)결과 준주거지 역으로 조정토록 심의되어 서울시 의견 을 수용함.	미반영
동작구 흑석동 186-102 강정숙	상도2동 370-12호의 용 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바람.	당초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였 으나, 서울시협의('99.7.23)결과 준주거지 역으로 조정토록 심의되어 서울시 의견 을 수용함.	미반영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 상도지구중심은 종전 「서울특별시상세계획
운영지침」('97.7)상의 중심지별 발전잠재
력 종합평가에서 중심성이 낮은(C등급)중
심지로 판단되었는바, 일반상업지역으로
입안한 부지에 대하여 근린상업지역으로
하향 및 준주거지역 계획범역의 축소 요망
-용도지역계획안상 ⑧, ⑨, ⑩ : 근린상업
지역
-용도지역계획안상 ④, ⑤ : 준주거지역
-용도지역계획안상 ⑥ : 준주거지역 범역
축소(상도동 186-26~183-31호 연장선 및
183-1, 181-22호에서 도로변까지 필지선
으로)
-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남측주거지는 제3
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계획안상 ⑦ : 준주거지역 범역
축소(노량진동 363-10, 363-164, 363-142,
363-274, 371-4호 필지선으로)
-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북측주거지는 제3
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계획안상 ③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

- 용도지역계획안상 ② : 제2종일반주거지
역(7층 이하), 주택개발구역 지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영도시장부지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 지
정 요망
6. 서울시의견
- 도시계획과 의견
-구역내 일부 노량진근린공원지역에 대하
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지역으로 조정이 바람직함.
-띠모양의 소규모 도로부지를 제1종일반주
거지역으로 계획 중인 사항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2개
(용도)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
의 중심선의 지역의 경계로 조정 요망
 - 도시관리과 의견
-상도지구는 중심성이 낮은 지구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한 상도동 368-19,
366-22, 365-4호 일대의 용도지역은 근린
상업지역 하향조정 필요
-상도동 183-21호 일대(상도동 181-11호,
183-33호 도로하단) 및 상도동 363-94호
일대(상도동 363-10호, 363-164호 북측)

<p>는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존치 요망</p> <p>○ 시설계획과 의견</p> <p>-용도지역 조정과 관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휴식공간(공원, 녹지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요함.</p> <p>-장승중학교 인접지역의 용도변경(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 요망</p> <p>7. 검토의견(전문위원)</p> <p>○ 본 안건은 동작구 상도동 366-1 일대 상도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반주거지역 116,426㎡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30,025㎡,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32,510㎡, 준주거지역으로 41,544㎡, 일반상업지역으로 12,347㎡를 변경하고, 도림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연장 385m, 면적 4,420㎡를 연장 438m, 면적 5,060㎡의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관악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연장 345m, 면적 4,900㎡)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p> <p>○ 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고 1997.2.1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0.6.15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되었으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하고 주변에 동작도서관, 동작교육청, 장승중학교, 동작등기소, 영도시장, 은행 등이 입지한 지역임.</p> <p>○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p> <p>-상도지구중심은 종전 서울특별시상세계획운영지침('97.7)상 중심지별 발전잠재력 종합평가에서 중심성이 낮은 C등급의 중심지로 판단되었는바, 일반상업지역으로 입안한 부지에 대하여 근린상업지역으로 하향 및 준주거지역 계획범역의 축소가 요망되며</p> <p>-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㉗번지역은 범역을 축소하고 ㉓번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여야 하고</p> <p>-㉒번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시는 12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영도시장부지에 대하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p>	<p>○ 서울시(도시관리과)에서는</p> <p>-상도지구는 중심성이 낮은 지구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한 상도동 368-19, 366-22, 365-4호 일대의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하며</p> <p>-상도동 183-21호 일대 (상도동 181-11호, 183-33호 도로하단) 및 상도동 363-94호 일대 (상도동 363-10호, 363-164호 북측)는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바,</p> <p>○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서울시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상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심성이 낮은 지구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보다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대상지 중 장승중학교 인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범역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p> <p>○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2개 용도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을 용도지역의 경계로 설정함이 바람직하며,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장승배기역 주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p> <p>8. 심사결과 : 원안동의</p> <p>○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896</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제출일자 2001. 6. 9</td> </tr> </table> <p>1. 안 건 명 : 중랑구 망우동 360-1 일대 의 1 개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중랑구 망우동 360-1 일대 의 1 개소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p>	의안 번호	896	제출일자 2001. 6. 9
의안 번호	896	제출일자 2001. 6. 9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중랑구 망우동 360-1 일대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870.5	12층 이하
중랑구 면목동 57-8 일대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145.5	4층 이하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 이견 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중랑구 망우동 360-1 일대 일반주거지역 2,870.5㎡를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변경하고 면목동 57-8 일대 일반주거지역 3,145.5㎡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 상기 2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었으나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위하여 2000년 제10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2000.11.15)에 안건을 상정, 심의과정에서 해제부지에 대한 주거지역 종세분화를 추진하여 부지 주변환경에 부합되는 개발을 유도하라는 권유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 서울시에서 용역시행한 서울시 주요산 경관풍치 보전계획(2000.9월)상 중랑구 망우동 360-1 일대는 아차산 경관풍치 보전계획 검토구역 내로 경관분석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규제안이 제시되었으며, 면목동 57-8 일대는 아차산의 조망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으로 지정토록 검토되어 입안하였으나
 ○ 망우동 360-1 일대는 망우로(폭 35m)에 접하고 있으며, 면목동 57-8 일대는 용마산길(폭 25m)에 접하고 있어 토지주의 반발이 우려되며, 금번 용도지역의 변경이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세분화 작업시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 검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933	제출일자	2001. 8.20
------	-----	------	------------

1. 안 건 명 :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지구(경관지구)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동대문구 이문동 348-1 일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

위 치	용 도 지 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면적 (m ²)	
동대문구 이문동 348-1 일대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020	녹지율 20% 이상 확보

○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 (자연경관지구 해제)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용 도 지 구 (m ²)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면 적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월곡지구)	동대문구 이문동 348-1 일대	899,112	897,092	(감) 2,020	

<p>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p> <p>5.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 이견 없음</p> <p>6. 검토의견(전문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은 동대문구 이문동 348-1번지 일대 자투리 형태의 소규모 밀집지역인 자연경관지구 2,020㎡를 해제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 동 지역은 경희대학교와 한국의국어대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내에는 '84년에 준공된 3층 규모의 연립주택 5개 동 80세대와 단독주택 1동이 있는데 '89.11.2 서울시에서 주변의 자연경관지구를 모두 해제한 후 자투리 소규모 자연경관지구로 남아 있어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 2000.4.26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청원(소개 : 박정철의원)이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어 2000.10.4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어 채택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고층·고밀개발의 우려가 있으며 자연경관지구 해제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검토가 원칙이므로 수용불가하다는 의견이 통보된 사례가 있고 ○ 또한 2000.12.9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시 동 	<p>지역 자연경관지구의 불합리한 점과 '98년도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자연경관지구 일제 해제의 관련자료를 첨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 2001.2.7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자연경관지구 해제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심의되어 추진된 사항으로,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 해제 원칙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시계획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p> <p>7. 심사결과 : 원안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번호</td> <td style="width: 35%;">934</td> <td style="width: 50%;">제출일자 2001. 8.20</td> </tr> </table> <p>1. 안건명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p> <p>2. 제안이유 : 금호동길(금호유수지~중구교통회관) 양측에 일반미관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p>	의안번호	934	제출일자 2001. 8.20													
의안번호	934	제출일자 2001. 8.20															
<p>3. 주요요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지구명</th> <th>지구의 세분</th> <th>위 치</th> <th>면적(㎡)</th> <th>연장(m)</th> <th>폭원(m)</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신설</td> <td>금호동길</td> <td>일반미관지구</td> <td>금호유수지 ~ 중구 교통회관</td> <td>60,000</td> <td>2,500</td> <td>양측 12m</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비 고	신설	금호동길	일반미관지구	금호유수지 ~ 중구 교통회관	60,000	2,500	양측 12m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비 고										
신설	금호동길	일반미관지구	금호유수지 ~ 중구 교통회관	60,000	2,500	양측 12m											
<p>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p> <p>5.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 이견 없음</p> <p>6. 검토의견(전문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은 금호동길(금호유수지~중구 교통회관)이 폭 12~15m에서 25m로 확장됨에 따라 도로연장 2,500m 구간의 양측 12m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 동 금호동길은 '99.7.2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2000년 12월 실시계획용역 준공되었으며 '98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731억원을 투입 공사 시행계획이며, 왕십리에서 금호동 4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도로주변 지역이 재개발사업으로 대규모 	<p>모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확장예정인 간선도로변의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관지구의 지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p> <p>7. 심사결과 : 원안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공원, 화장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번호</td> <td style="width: 35%;">936</td> <td style="width: 50%;">제출일자 2001. 8. 20</td> </tr> </table>	의안번호	936	제출일자 2001. 8. 20													
의안번호	936	제출일자 2001. 8. 20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화장장)결정 | 지공원과 화장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
 2. 제안이유 :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에 묘 |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신설	공 원	묘지공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등 일대	130,320	서울추모공원 건립부지

나. 도시계획시설(화장장) 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건축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화장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68번지 일대	39,700	20% 이하	50% 이하	지반고에서 25m 이하	

4. 주민의견청취결과 : 별첨

- 제출자현황 : 총 7,284건(56,827명)
 - 과천시장(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 16건(564명)
 - 지역주민 등(청계산지킴이운동본부) : 7,268건(56,263명)
 - 의견서 A형(반대) : 2,465건, 21,938명
 - 의견서 B형(반대) : 2,009건, 13,821명
 - 의견서 C형(반대) : 2,787건, 20,485명
 - 의견서 D형(찬성) : 7건, 19명
- 의견내용(요약)
 - 과천시장(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 추모공원 위치변경, 진입로 위치변경, 환경오염 피해 방지대책 수립, 재산상의 피해 및 인체유해 물질에 대한 대책, 진입도로 확장반대, 잔여지 등 수용, 대토, 소규모로 분산설치, 세원마을 주민이주대책 또는 수용 특단의 대책 제시요구 등
 - 지역주민 등(청계산지킴이 운동본부)
 - 부지선정위원회(장개협)에서 일방적 부지 선정 및 서초구청장과의 1분의 공식·비공식 공문화 없이 부지선정은 잘못 등(의견서 A형 참조)
 - 대규모시설, 교통대란 발생 등(의견서 B형 참조)
 - 환경 및 산림 훼손 등 복합적인 사항(의견서 C형 참조)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 이견 없음

- 화장물 급증 및 관계법률 개정 등에 따라 권역별 추모공원 조성이 시급하고 최종부지 선정이 엄격하게 진행되었음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결정에는 이견 없음
 - 동일부지에 대한 중복 도시계획 공람공고에 대한 법적 검토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일시적인 교통수요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130,320㎡에 서울추모공원을 건립코자 묘지공원으로 결정하고 원지동 68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39,700㎡를 화장장으로 결정(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고에서 25m 이하)하기 위한 사안으로
 - 우리 나라의 장묘문화의 실태는 묘지면적이 국토가용 면적의 4%, 공장면적의 3배에 이르며 이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묘지로 훼손되고 있고 매장시 화장보다 10배에 달하는 개인의 비용부담으로 연간 1조2천억원이 소요되며 성묘행렬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연간 3천3백억원이 소모되고 있으며, '98년 기준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8%, 일본 99.9%, 중국 100%, 네델란드 98%이며
 - 장사법이 개정 200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장묘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p>○서울시에서는 화장·납골의 장묘문화 선진화 사업을 역점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설인 승화원을 매 5년마다 동·서·남·북 4개 권역에 건립 확보하고, 추모의 집은 시·자치구·민간이 지역단위로 분산건립하고, 모든 장묘시설은 무공해·친환경·최첨단 시설로 건립한다는 장묘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p> <p>○또한 시민의 화장률이 1998년 30% 미만에서 2000년 50%를 초과하였으며, 2005년에는 70%에 이르러 1일 69~97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나 벽제승화원이 확보하고 있는 23기의 화장로로서는 처리가 불가하며, 추모의 집 또한 벽제리, 용미리 등 6개소에 63,827위를 갖추고 있으나 2002년 3월이면 만장되어 더 이상 납골이 불가능한 실정으므로 서울시민의 복지시설로서 서울추모공원의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p> <p>○그간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p> <p>-'98.11월 서울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 '99.6월 25개 후보지를 선정(서울지역 13개소, 경기지역 12개소), 2000.8월 학계·종교계·여성계·시의회·시민단체·전문가 등 32명으로 구성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를 발족, 2001.1~7월 각분야 전문가, 각계시민대표 등 18명으로 추모공원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p> <p>-2001.4.16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주민대표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공청회 개최인사말씀 이후 발표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서초구 등 주민대표 및 방정식 주민들의 계속된 방해발언으로 정회하였으며, 정회 이후에도 퇴장한 주민들이 입장하지 않아 13개 후보지에서 문서로 제출한 의견서에 따라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선언하고 폐회</p> <p>-2001.4.26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주민대표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오전공청회는 10:00~12:30까지 중랑, 도봉, 은평, 마포, 강서 등 5개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의견을 발표하고 오후 공청회는 15:00~19:00까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 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서</p>	<p>초, 강남주민은 퇴장하고 나머지 구만 지역별 의견 발표</p> <p>-2001.5.16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제3차 공청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서초, 강남주민 전원 불참으로 무산</p> <p>-2001.7.5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에서 서초구 원지동과 강서구 오곡동의 2개소를 추천 2001.7.9 원지동 지역을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했음.</p> <p>○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권자가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 서초구청장이 행위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2001.6.2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개정을 건의한 상황인데</p> <p>○추모공원 중 승화원과 추모의 집 등 추모관련 직접시설은 전체면적의 10% 미만으로 승화원은 부지 깊숙이 은폐된 공간에 조성하고 나머지 90%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 산책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고품격의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되, 무연·무취의 최첨단 설비를 갖춘 승화원으로서 장례식·화장·납골의 원스톱 토털장례서비스와 예술품 수준의 추모문화시설로 시설물을 포함 부지전체를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설계·시공에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 자문·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바,</p> <p>○당해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 청계산지기운동본부 등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화장장 및 납골당이 필요한 시설물임을 인정하면서도</p> <p>-부지선정위원 18명 중 부지선정 단계에서 불 때 전문가는 공원·교통·도시계획의 3명뿐이고 나머지 15명은 전문성이 없고 평가점수가 천차만별하며 정밀심사자료 및 연구자료 공개 없는 공람공고는 무효이며</p> <p>-서초구청장과 1분의 공식·비공식 공문</p>
---	---

화 없이 선정되었으며, 추모공원 주변 지역은 고속도로 및 대형유통시설이 입지하여 매우 복잡하며 현재의 교통량으로도 포화상태로서 대형집중화 시설인 추모공원이 입지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며 -추모공원 대상지인 청계산 개나리골은 삼림육장 등이 위치하여 공휴일이면 5만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서 동 휴식공간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벽제화장장이 지난해 증설되어 시급성이 없고 벽제 용머리 등에는 무연고 묘지가 30~40%나 되어 그곳을 재개발함이 타당하므로 동 추모공원건립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화장률 급증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권역별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남비현상 때문에 후보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긴 하나 지자체의 근본정신에서 보면 공론화가 부족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시민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추모공원의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공람공고시 제시된 교통, 환경, 이주민 대책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 서울시의 장기 장묘정책방향,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공원조성계획, 교통대책, 진입로의 적정성, 환경오염 방지대책, 인체유해물질 발생여부 및 방지대책, 인접 새원마을 주민에 대한 이주, 수용 또는 환경개선대책, 기타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종합검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소수의견제시)
 ○ 소수의견 :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68번지 일대는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대형유통센터 등이 있어 상습교통정체지역으로 화장장 및 추모공원 부지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반대함.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937
------	-----

제출일자 2001. 8.20

-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결정
- 제안이유 : 금천구 독산동일대 관악산자연공원과 독산동 182-44 일대 정심초등학교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 주요요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공 원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금천구 독산동 일대	12,409,242	-	12,409,242	· 면적변경 없이 학교와 위치변경(A=1,134m ²)
변경	학 교	정심초등학교	금천구 독산동 182-44 일대	13,550	증) 2,084	15,634	· 면적변경 없이 공원과 위치변경(A=1,134m ²) · 구적 오차에 의한 증가(A= 2,084m ²)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 이견 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금천구 독산동 182-44 일대 정심초등학교 부지중 입상이 양호한 토지 1,134m²를 인접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하고, 관악산자연공원중 학교체육장으로 이용가능한 결개지로 경사가 완만한 토지중 동일면적을 학교용지로 지정하고, 학교용지의 구적오차(증 2,084m²)를 정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 정심초등학교는 체육장 보유면적이 기준면

<p>적보다 1,002㎡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상이 양호한 학교용지와 체육장으로 이용가능한 공원용지를 상호대체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p> <p>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938</td> <td style="width: 70%;">제출일자 2001. 8.20</td> </tr> </table> <p>1. 안건명 :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광진구 구의동 59-36일대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의안 번호	938	제출일자 2001. 8.20
의안 번호	938	제출일자 2001. 8.20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광진구 구의동 59-36 일대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669.4	

<p>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p> <p>5.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 ○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해제시 공공기여 방안(가로변 쌈지공원 형태의 개발공간 조성 등) 검토요망, 2종일반주거지역 지정에 이견 없음.</p> <p>6.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아차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이면지역이 저층 주택가이므로 천호대로변 개방감 확보,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건축물 배치계획수립 필요</p> <p>7.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광진구 구의동 59-36번지 일대 3,669.4㎡가 '77.8.22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어 마포구에서 구의동간을 운행하는 55번 시내버스의 정류장으로 사용하여 오다 자동차정류장 폐지를 위하여 2000.11.15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거지역 세분화를 동시에 하도록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된 사안으로 ○ 동지역은 지하철5호선 아차산역과 광나루역 사이의 천호대로변에 위치하였으며 주변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있고 이면은 저층주택가가 있는 곳으로 아차산과 용</p>	<p>마산이 근거리에 있어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해제시 가로변 쌈지공원 형태의 개발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아차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이면지역이 저층주택가이므로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시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p> <p>8.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공원, 화장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936</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2001. 8.2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청</td> </tr> </table> <p>1.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화장장) 결정</p> <p>2. 입안내용</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의안 번호	936	제출년월일 : 2001. 8.2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청
의안 번호	936	제출년월일 : 2001. 8.2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청		